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 경과

- 제 출 : 2007. 11. 27.(사천시장)
- 회 부 : 2007. 11. 27.(총무위원회, 의안번호 제81호)
- 상 정 : 2007. 12. 05.(제11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과장 정대성)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규정의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기준에 따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공장등록 증명 : 1통당 기존 500원 ⇒ 개정 1,000원
- 2)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신청
 - 법인 : 1건당 기존 20,000원 ⇒ 개정 30,000원
 - 개인 : 1건당 기존 5,000원 ⇒ 개정 20,000원
- 3) 공유재산 대부신청
 - 신규 : 1건당 기존 500원 ⇒ 개정 5,000원
 - 계속 : 1건당 기존 300원 ⇒ 개정 3,000원
- 4) 의료기관 개설허가
 - 종합병원 : 1건당 기존 50,000원 ⇒ 개정 100,000원
 - 일반병원 : 1건당 기존 30,000원 ⇒ 개정 100,000원
- 5)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 1건당 기존 15,000원 ⇒ 개정 40,000원

- 6) 의료기관 개설신고 : 1건당 기존 20,000원 ⇒ 개정 40,000원
- 7)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 : 1건당 기존 10,000원 ⇒ 개정 20,000원
- 8)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 (기존 1건당 20,000원 ⇒ 30,000원)
- 9)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 건당 30,000원(신규)
- 10)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 건당 10,000원(신규)

다. 관계법령

- 대통령령 제20310호
- 「지방자치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진기)

-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7년10월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임.
- 주요내용으로
 -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16종의 수수료 중 우리시 관련 조례 별표1(제증명수수료)와 수수료 금액이 상이한 공장등록 증명 등 9종의 수수료는 수정하고, 체육시설업신고 등 2종의 수수료는 신설 추가하였으며(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등 5종은 현행과 동일하여 변경하지 않음)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담당부서의 「수수료 원가계산조사표」에 따라 기존 1건당 20,000원을 30,000원으로 조정하였음.
- 검토의견으로
 -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상에 반영하는 것이며, 게임제공업 허가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화한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위 원	질 의 내 용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유자 위 원	0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면 연간 증가하는 수수료 수입은?	세무과장 정 대 성	0 현재 수수료 세입은 1,570천원 정도이며, 개정시 세입은 4,498천원으로 연간 2,927천원 정도 증가 예상됨.									
탁석주 위 원	0 우리시 각종 수수료 징수요금의 경우 타시군과 비교해서 설명바람.	”	0 증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며,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이정희 위 원	0 공유재산 대부신청시 수수료를 비교하면 10배 인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음 <table border="1"><tr><td>구분</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신규</td><td>500원</td><td>5,000원</td></tr><tr><td>계속</td><td>300원</td><td>3,000원</td></tr></table>	구분	현행	개정안	신규	500원	5,000원	계속	300원	3,000원	”	0 전국적으로 동일사무간 형평성 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함.
구분	현행	개정안										
신규	500원	5,000원										
계속	300원	3,000원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